

# 행정자치부 시정요구

제 목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처리 업무 부적정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경상남도 본청

내 용

「위험물 안전관리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이에 근거하여, 경상남도 ○○본부(○○○○과) 등 18개 소방서에서는 [표 1] 과 같이 8,778개의 위험 제조소 등<sup>89)</sup>을 관리하고 있다

[표 1] 경상남도 내 위험물 제조소 등 관리현황 (단위 : 개소)

계	제조소	저장소	취급소	비고
8,778	173	6,913	1,692	-

\* 자료 : 경상남도 ○○본부 제출자료 재구성

제조소 등을 관리함에 있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제조소 등의 설치자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·인도한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 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

상속인, 제조소등을 양도·인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며,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승계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89) “제조소 등”이라 함은 「위험물 안전관리법」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조소·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.

그러나, 경상남도 ○○본부(○○○○과)에서는 제조소등을 허가한 후 [표 2]와 같이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사망하여 설치자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지위승계 처리 및 과태료 총 6,300천원의 부과 처분 등의 조치 없이 부적정하게 관리하였다.

[표 2] 경상남도 소방서별 지위승계 미처리 현황

연번	상호명	대표자 (생년월일)	지위승계 및 조치계획			비고
			사유 (일시)	승계여부	조치사항	
1	○○○○(주)	대표이사 (*****)	대표자 사망 (****.**,**)	미승계	과태료부과 예정	
2	○○○○	○○○ (*****)	대표자 사망 (****.**,**)	미승계	과태료부과 예정	
3	○○○	○○○ (*****)	대표자 사망 (****.**,**)	미승계	과태료부과 예정	
4	○○○	○○○ (*****)	대표자 사망 (****.**,**)	미승계	과태료부과 예정	
5	○○○○○○	○○○ (*****)	대표자 사망 (****.**,**)	미승계	과태료부과 예정	
6	○○○○○○	○○○ (*****)	대표자 사망 (****.**,**)	미승계	과태료부과 예정	
7	○○○	○○○ (*****)	대표자 사망 (****.**,**)	미승계	과태료부과 예정	
8	○○○○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	○○○ (*****)	대표자 사망 (****.**,**)	미승계	과태료부과 예정	
9	○○○	○○○ (*****)	대표자 사망 (****.**,**)	미승계	과태료부과 예정	

\* 자료 : 경상남도 ○○본부 제출자료 재구성

### 조치할 사항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경상남도지사는

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총 6,300천원 처분하시고,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